



2015. 3. 9. (월)

## 2015년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및 운영계획(안)



"평화의 법정, 감동의 서비스"

수 원 지 방 법 원

# 2015년 수원지방법원

##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및 운영계획(안)

2015. 3. 9.

수원지방법원

### 1. 목적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고,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대학생 포함)이 재판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재판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에 도움을 주고, 재판진행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면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사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2. 모집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모집인원	25명 내외	
모집기간	2015년 3월 13일(금) ~ 23일(월)	
모집대상	본원 관내 대학생(7개교)와 시민단체 등 선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학생(학교로부터 추천된 3명) •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찰대학교, 단국대학교, 수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학생(학교로부터 추천된 각 2명) • 시민단체 등(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 단체 회원 2명 추천)	
모집방법	각 기관에 협조공문 시행	
활동기간	2015년 4월 ~ 11월	
위촉식 및 간담회	2015년 4월 중(선정 후 추후 통지)	

### 3. 시민사법모니터링 운영 계획

- 위 모집계획에 의하여 선정된 사법모니터를 4개조로 나누어 활동
  - ▶ 1조 : 4월~5월/ 2조 : 6월~7월/ 3조 : 8월~9월/ 4조 : 10월~11월)
  - ▶ 위촉식 후 간담회에서 조 편성 및 모니터링 할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가사부, 행정부) 선정 예정
- 활동 시작 전 활동 요령 안내를 위한 간담회(2015년 4월 중)를, 활동 종료 후에는 모니터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각 실시 예정(2015년 12월 중)
- 시민사법모니터에게는 법원 기념품 수여, 법원견학, 그림자 배심원 참가신청시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시민사법모니터는 2개월 단위로 각 재판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2회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10일 이내에 수원지법 총무과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별지 2. 참조)를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별지 1】

## 시민사법모니터 추천서

성명 및 성별	(남, 여)
나이	
소속(단체/학교·과)	
주소	
연락처	
E-mail	
추천사유 및 경력사항	
1. 추천사유(간단히 기재요망)	
2. 경력사항(예) 법원견학, 봉사활동, 그림자배심원 활동 등)	

위의 사람을 2015년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로 추천합니다.

2015년 월 일

추천인 ○○대학교 ○○과 ○○○ (인/서명)  
추천인 ○○단체 ○○○ (인/서명)

※ 기타 문의사항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시민사법모니터링 담당자(☎ 031-210-1129)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지 2】

## 시민사법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성명	
소속(단체/학교·과)	
연락처	
<b>총평</b>	
<p><b>자유로운 의사 개진</b>(모니터링한 재판부 전체의 재판진행과 관련된 느낌이나 소회를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015년 월 일

제출인 (인/서명)

수원지방법원 귀중

시민 및 법원가족사법모니터링 요원 : ○○○  
대상재판부 : ○○○

## 법정모니터링 결과지

우리 법원은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더욱 넓히고, 재판부의 바람직한 법정언행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판부의 재판진행과 관련한 아래의 설문에 답하여 보내 주시면, 소송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재판을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1. 자유로운 의견 개진 (재판진행과 관련된 느낌이나 소회 등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재판장의 음성과 용어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3. 재판부는 당사자를 바라보면서 말을 듣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4. 재판장이 판결선고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5.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친잔을 주는 느낌을 받았는가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다소 화를 내거나 편잔주는 느낌을 받았다. ③ 화를 내거나 편잔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6.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가 필요한 진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에 의해 제지당하거나 거부된 적이 있는가요.**

- ① 있다. ② 없다.

**6-1. (위 6.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당시 재판부가 진술을 제지하거나 진술기회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가요.**

- ① 설명하였다. ②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여 재판부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 는 인상을 받았는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8. 재판이 고지된 예정시작시간보다 지연되었는가요.**

- ① 지연되지 않았다(10분 이내) ② 10분 ~ 20분 지연, ③ 20분 ~ 30분 지연, ④ 30분 이상 지연

**8-1. (위 8.항에서 ② ~ ④번을 선택한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시작시간이 지연된 사정에 관한 양해를 구하였는가요.**

- ①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②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9. 재판장이 주장을 정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여 들어주면서 진행과정을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재판을 진행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0.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사 등이 증거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재판부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 는가요.**

- ① 거부된 적 있다. ② 거부된 적 없다.

**10-1. (위 11.항에서 ①번을 선택한 경우) 당시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설명하 였는가요.**

- ① 설명하였다. ②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11. 증인이 법정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당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